

1985년 개안수술사업 실무지침

- 협회사무국계공 -



- ◇... 1983년 5월부터 본협회가 주관한 천주교회 200주년 무료개안수술 사업 ...◇
- ◇...으로 지난 '84년 말까지 전국 11개 지정병원에서 917명 (1,084안)에 대 ...◇
- ◇...한 개안수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기간중 수술신청을 받고도 병원 ...◇
- ◇...의 수용능력과 예산부족으로 아직 수술을 베풀지 못한 불우영세민 340명 ...◇
- ◇... (약 400안) 모두에게 빛을 찾아주기로 한 한국주교회의의 배료에 의하 ...◇
- ◇...여 200주년 지속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중에 있다. ...◇
- ◇...다음은 '85년 개안수술사업의 실시요령을 중심으로 실무에 참고될 사항 ...◇
- ◇...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註>.....◇

1. 목 적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기간중에 무료 개안수술 신청을 받고 병원의 수용능력 또는 예산부족으로 수술혜택을 주지 못한 불우 영세민인 모두에게 빛을 찾아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안수술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2. 실시요령

이 사업계획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 200주년 개안수술 실시요령에 정한 기준과 규정을 준용한다.

3. 수술 대상자

200주년 개안수술 사업기간중(1983. 5. 1 ~ 1984. 12. 31)에 무료개안수술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직 수술혜택을 받지 못한 불우 영세민 및 극빈자

4. 수술대상 질병의 범위

수술을 통하여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음의 질병으로 한다.

가. 백내장, 녹내장 및 각막질환(안구기증이 있는 경우 각막이식수술에 한함)

나. 200주년 개안수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부위에 재발한 전향의 질병

5. 지정의료기관 및 수술목표

지정의료 기관별 수술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양안수술의 원칙 : 한눈을 수술한 결과 시력개선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양안(상대편 눈)을 수술할 수 있으나 수술목표한도 안수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지정병원 간의 환자이송

각 지정의료기관의 환자수용능력을 참작하여 신청인원이 많은 의료기관은 신청인원이 적은 의료기관에 아래와 같이 환자를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가. 강남성모병원은 수술대상자 40명을 성모병원에 이송한다.

나. 강남성모병원 수술목표중에는 성나자로원과 성심인애병원 환자 14명(출장수술)이 포함

지정의료기관	소재지	85년 수술목표 (최고한도)
성모병원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60안 이내
강남성모병원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505번지	60안 이내
성바오로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20안 이내
메리놀병원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	100안 이내
성분도병원	부산시 동구 초량동 31-3	35안 이내
파티마병원	대구시 동구 신암동 302-1	25안 이내
가톨릭병원	대구시 남구 대명동 3056-6	17안 이내
홍안과병원	광주시 동구 궁동 50	20안 이내
이안과의원	대전시 동구 중동 26-16	63안 이내
		400안

된다.

다. 메리놀병원은 수술대상자 9명을 성분도병원에 이송한다.

라. 각 지정병원은 수술목표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에 보고하며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다른 지정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7. 진료비 지급기준

개안수술에 소요된 진료비는 각 병원의 자체수가와 관계없이 아래 기준에 의하여 한국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지급한다.

8. 교정안경의 무료지급

지정의료기관은 수술후 시력교정상 필요한 환자에게는 처방에 의한 교정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9. 진료비의 청구와 지급

개안수술을 종료한 지정의료기관은 진료비 청구서(2호 서식)에 진료내용을 기록하고 환자의 수술확인을 받아 매월 말일까지 본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료비 청구서(등기)를 제출한다.

구분	일반영세민	의료보험 2종환자	수용시설환자 (수술팀출장의 경우)
녹내장, 백내장 기타 1안당 진료비	42만원	42만원에서 의료보호비(국고부담금)를 공제한 금액	25만원
각막이식수술 1안당진료비	55만원	55만원에서 의료보호비(국고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25만원

■ 수용시설환자 진료비는 수용시설 관리자에게 지급하며, 수용시설 관리자는 수술팀에게 출장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의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0. 사업의 시행계획

1985년 개안수술사업을 아래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1월..... 준비작업, 사업계획 확정
2월~7월... 개안수술실시

8월~9월... 진료종결(통원치료기간)

10월..... 감사기도회 및 사업종결행사

10월 초순... 지역별 행사

10월 중순... 전국(중앙)행사

11. 사업의 관리와 개안수술사업부 사무실 설치

200주년 기념주교위원회가 해체되어 '85년본 사업은 한국주교회의(사무처)가 관리하며, 본 가톨릭병원협회 사무국에 개안수술사업부 사무실

을 두고 실무를 관장한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개안수술사업부
(전화 593-5141, 구내 1330번)
(135)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의대 336호실)